





##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주 성 빈\*

### 〈요 약〉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주제어 : 체포, 구속, 안보, 간첩, 테러, 형사절차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br>II. 주요국의 형사특례조항 검토<br>III. 국내 안보형사사례 분석<br>IV. 안보사범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r>V. 결 론 |
|---|

## I. 서 론

개인은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 복지, 행복이라는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그만큼 중요하다. 「형법」도 국가의 존립과 안녕이라는 체계 안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라는 보호 법익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도 안보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 온 것이 사실이다. 안보분야의 선진 국가들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안보위협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테러위협과 휴전상태라는 국내외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위협에 대한 세부적인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안보의 시각이 적절히 반영하면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즉, 우리는 그러한 인식에만 공감하고 있는 수준이며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과거 지향적이다. 가령, 왕재산 간첩사건에서 보듯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 참고인들도 진술을 거부해 달라”고 종용하고, 일심회 간첩사건에서는 피의자가 5명임에도 공동 변호사는 37명에 달하여 국정원 59회, 검찰 28회, 총 87회의 릴레이 변호사 접견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이메일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북한의 발송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기도 하였다. 최근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간첩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변호사를 접견한 뒤 핵심 진술을 반복하였고, 직파 간첩사건 임에도 검찰이 피의자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변화되는 안보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법에 적용되는 형사절차를 안보사범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등 소극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봐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신안보 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안보형사 법제도를 살펴본 후, 각국의 안보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중 안보 형사절차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상 실제 안보사범 처리 과정에 적용해봄으로써 나타난 미비점과 법집행 과정에서의 나타난 방해 요소를 사례를 통해 분석한 후, 국내 안보 형사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주요국의 형사특례조항 검토

### 1.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행정부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애국법 제412조는 테러리스트 추정 외국인의 필요적 구금, 인신보호영장, 사법판단(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s, habeas corpus, judicial review)과 관계된 것으로, 소위 예방적 구금을 허용한 것으로, 이민국적법 제 236조를 개정하여 외국인 테러분자의 구금 및 석방, 확증 및 소송절차의 개시, 출정 영장 및 재심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 하에 테러리스트로 추정 및 의심되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7일<sup>1)</sup>,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최대 60일까지<sup>2)</sup> 구금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1) The Attorney General shall place an alien detained under paragraph (1) in removal proceedings, or shall charge the alien with a criminal offense, not later than 7 days after

해당 외국인을 추방·기소·석방해야 하며, 그 이상의 구금을 지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테러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금에 관한 헌법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조항으로 평가된다. 법무부 장관은 6개월마다 위험인물로 지정된 외국인의 위험성 여부를 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구금된 외국인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재량으로 적절한 조건을 붙여 위험인물지정을 유지한 채로 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6개월마다 서면으로 각종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험인물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추후에 검증받지 아니하면 외국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6개월마다 국회(상·하원) 사법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회사법위원회 보고 내용

연번	내용
1	위험인물로 지정된 외국인의 수
2	위험인물 지정사유
3	지정된 외국인들의 국적
4	구금된 각 외국인의 구금기간
5	추방이 면제된 외국인의 수
6	추방된 외국인의 수
7	위험인물지정이 해제된 외국인의 수
8	석방한 외국인의 수 등

## 2. 영국

영국의 경우, 2000년 테러리즘법에서 테러용의자의 심문을 위하여 최대 7일까지

the commencement of such detention. If the requirement of the preceding sentence is not satisfied,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alien.

- 2) An alien detained solely under paragraph (1) who has not been removed under section 241(a)(1)(A), and whose removal is unlikely in the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 may be detained for additional periods of up to six months only if the release of the alien will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or any person.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9·11 미국 동시다발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리즘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의 강화, 국제 테러리스트로 인정된 자에 대한 구속절차의 개정 등을 포함하는 대테러 범죄 및 안전보장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sup>3)</sup>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경우에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중에 대테러 예방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의 입법과 함께 관리명령(control order) 제도가 도입되어 폐지되었으며, 당시 구금 중이던 4명의 외국인 테러리스트 용의자는 관리명령(control order)을 통하여 자택감금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처분에 관해 2001년 대테러범죄 및 안전보장법은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를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류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였다(初川 滿編, 2009: 188). 2003년 형사사법에서는 테러용의자의 심문을 위한 구금기간을 14일로 연장하였고, 2005년 테러리즘방지법에서는 테러용의자에게 전자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테러리스트의 행동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대테러 예방법(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sup>4)</sup>을 제정하였다. 본 법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관리명령(control order)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택감금명령으로서 ‘테러리즘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내무부장관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인 즉, 지정된 물건·물질의 사용 및 소지 금지, 지정된 서비스 및 시설의 사용 금지,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 특정 행동에 대한 제한, 특정 인물 또는 대중과의 의사소통 금지, 거주지의 제한 및 방문자의 제한, 특정지역 및 특정시간의 이동 제한, 여권의 압류, 소지품의 압류 및 분석 강제, 전자감시 및 사진촬영 강제, 그 외에 어떠한 내용이든 24시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테러리즘법 제28조에서는 테러용의자의 경우에 기소 없이도 최대 28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동법 제41조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테러범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독일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는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12조 제3항에

3) 현행 규정은 <http://www.statutelaw.gov.uk/content.aspx?activeTextDocId=267726> 참조.

4) 현행 규정은 <http://www.statutelaw.gov.uk/content.aspx?activeTextDocId=1414108> 참조.

의하여 테러범과 같은 안보사범에 있어서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인 접촉의 제한 외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등 일반범죄인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서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4. 일본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범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대상 행위가 일본 형법상의 범죄로서 일본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통상적인 국제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항공기납치, 인질 등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특별 입법을 통해 그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범죄라 하여도 입법상의 미비로 테러범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형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국외범 처벌 규정 외에도 제4조의 2에 포괄적 국외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형법 각칙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조약에 의하여 당해 행위가 일본 국외에서 행해진 때라도 일본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Ⅲ. 국내 안보형사사례 분석

#### 1. 사법절차상 안보사범 처리 사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가안보사범은 언론에 공개된 사례뿐만 아니라 미공개된 사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발,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사기관들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표 3>과 같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00년대 이전 간첩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대표적인 사례

사건명	검거	판결	무죄취지	비고
이준구	1965		무죄 방면	이준구 전 경향신문사 사장 / 신문사 탈취 수단으로 간첩사건을 이용한 사건
동백림 사건	1967	파기환송, 재상고심	간첩죄 모두 무죄	
무전 간첩단	1968	서울형사 (조○○)		1명만 실행, 2명 무죄, 24명 집행유예
홍선길	1981	대법원 (이○○)		재미교포의 북한 가족 방북 후 한국의 가족방문 시 형제 집 가는 길에 검문소 본 것을 군사기밀 탐지로 기소
김준보	1982	대구지법 (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자백의 임의성	
송씨 일가	1983	대법원 (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자백의 임의성	대법에서 두 번 무죄,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결국 유죄
김현장·김영애 부부	1989	서울고법	유럽 민첩을 반국가단체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	
홍성담 사건	1990	대법원 (이○○)	변호인 없는 자백은 임의성 없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음	평양 축전에 결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혐의
노중선	1992	대법원 (김○○)	간첩 인지 못했으면 간첩 방조 성립 안 됨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 김낙중 관련 / 간첩방조 무죄, 국가보안법 유죄
이광철 등	1994	서울고법 (김○○)	공지사실은 '기밀누설죄' 적용 불가: 현재 결정 반영	구국전위 사건 간첩 혐의 무죄 / 국가 상대 명예 훼손 소송 승소
강순정	1994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이○○)	공지사실은 '기밀누설죄' 적용 불가: 현재 결정 반영	대법원 국가 기밀 관련 판례 변경
박충렬	1995	서울지법 (유○○)	헌법 범위 내 표현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적표현물로 기소되어 무죄
박창희	1995	서울지법		외대 교수 / 노동당 입당 및 간첩죄 무죄 / 편지 교환 등 회합통신 유죄
간수	1996	대법원 (김○○)	기밀사실 탐지수집 전달죄 처벌 불가	일부 무죄
고영복	1997	1심 간첩죄 무죄	회합통신은 유죄	
		2심 간첩방조죄 무죄	단순 은신처 제공	

사건명	검거	판결	무죄취지	비고
송유진	1997	서울지법 (민○○)	국가기밀범위 엄격적용	《월간무역》, 《무역진흥》 등 경제 전문지 전달은 간첩죄 아님 / 가족 상봉 위해 입북한 기업인 간첩죄 무죄
동아대 자주대오	1998	부산고법 (박○○)	간첩 혐의 무죄 / 이적 단체 유죄	
		대법	무죄	

자료: 김병선, 2012: 84-85; 국가정보원, 2007: 301-311.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가안보사범의 사례 중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심회 간첩사건

#### (1) 사건 개요

美 시민권자 J某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386운동권 출신 정·재계 인사를 포섭하여 「일심회」를 결성한 후 국내정세 동향을 수집·보고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사건이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총 6명 검거하였다.

#### (2) 수사 결과

J某는 1987년경 미국 유학중 북한공작조직에 포섭되어 지령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후 정착하여 IT업계에 종사하면서 386운동권 출신들에게 접근·친교를 유지하면서 사상성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였다.

정·재계 S某(인터넷 영어학원 원장), C某(○○당 사무부총장), P某(국회의원 보좌관)를 포섭, 「일심회」를 결성한 후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과 접선하였고 총선·지자체 선거 등 국내 정치정세 동향을 수집하여 E-mail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3) 재판 결과(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소위 「일심회」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로서 이적성이 인정되나, 그 구성원의 수, 조직 결성의 태양, 활동방식과 활동내역에 비추어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단체를 주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국가보

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2) 지하당 「왕재산」 간첩 사건

### (1) 사건 개요

대학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 총책 K某는 1993년 8월, 김일성으로부터 ‘남한 혁명지도부 결성’ 지령을 받고, 주사파 운동권 4명을 포섭하여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하였다. 주로 군사자료와 국내정세 등을 北에 보고한 사건이다. 2011년 7월 8일, '북한 225국(옛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국내 지하당' 조직 총책으로 10여년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IT업체 대표 K某씨를 구속했다.

### (2) 수사 결과

수사 결과, 총책 K某 등 「왕재산」 핵심지도부는 北 「노동당」에 가입한 후 ‘관덕봉’·‘관순봉’·‘관상봉’ 등 대호명(위장호칭)을 부여받은 후 北 「255국」으로부터 “2014년까지 인천시청과 방송국, 포탄공장·軍·경찰서에 조직원을 포섭하여 결정적 시기에 장악 또는 폭파하라”는 등의 지령을 수수하고 我軍 작전계획·컴퓨터 암호화 기술 등 군사자료와 국내정세를 北에 보고 하는 한편, 국내 정당·관공서 등 제도권 침투를 기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재판 결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총책 K某는 징역·자격정지 각 7년, 인천지역책 L某·서울지역책 L某는 징역·자격정지 각 5년, 재정지원책 L某는 징역·자격정지 각 4년, 선거거점책 Y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 3)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사건

### (1) 사건 개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2) 수사 결과

2012년 6월, 보위부 공무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인 반복 활동가 최모씨의 동

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3) 재판 결과

재판 결과, 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동일하였다.

## 4) 내란음모 · 선동 지하 혁명조직 「RO」 사건

### (1) 사건 개요

2010년 5월 「111」 콜센터에 “舊 「민혁명」 잔존세력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지하조직 「RO」를 결성하여 從北혁명을 기도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약 3년여 걸친 내사를 통해 국회의원 L某 등 「민혁명」 간첩사건 잔존 세력들이 충북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내란을 음모한 사실을 포착한 사건이다.

### (2) 수사 결과

2013년 8월에 수사를 착수한 후, L某 등 핵심 조직원들이 국회 등 제도권에 침투하여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2013년초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2013년 5월, 조직원 130여명이 은밀히 회합하여 무장폭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의 등 내란음모 사실을 규명하였다.

### (3) 재판 결과

2014년 2월, 1審 법원은 「RO」의 실체 및 내란음모 사실 등을 인정하여 「RO」 핵심조직원 7명에게 모두 重刑을 선고하였고, 총책 L某는 징역12년·자격정지 10년, 중앙위원 J某 및 북부·남부·동부지휘책 등 4명은 징역·자격정지 각 7년, 중서부 지휘책 H某는 징역·자격정지 각 6년, 중서부 조직원 H某는 징역·자격정지 각 4년이 선고되었다.

## IV. 안보사범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안보사범 대응의 문제점

#### 1) 현행 형사법의 적용상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범죄의 특수성에 비하여 우리 현행법 체계는 이를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안보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안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의 처벌을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다양한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는 안보범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안보범죄에서 일반 형사범죄의 특성을 추출해 처벌하는 것이 아닌, 안보범죄 특유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과 형사소추 절차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 등 변호인의 사주 행태 극복의 어려움

국가안보사범 특히 간첩과 관련된 사건은 증거를 수집·보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내사 및 초동수사 시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거된 간첩들에 의한 자백 또는 조사시 드러난 진술이 재판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전 차단하는 행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 이후 피의자들은 태도를 바꿔, 참관을 거부, 인권위원회에 제소, 묵비권 행사 등 조사 불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의자 조사 중 수사관이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실에서 나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행동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신병을 이송하려 하자 문제 삼겠다고 교도관에게 경고하였다. 또한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함께 있는 관계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관을 제소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서명하고 확인하였던 압수자료에 대해서도 개봉시 내용확인을 위한 참관 요구를 거부하고 디지털 증거의 사본복제를 위한 현장 참관 때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수사 중인 보위부 직파 여간첩 이○○(48세)를 집견하면서 국보

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위폐 거래를 한 사실로 검사가 5년형을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며 허위진술을 사주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가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 3) 빈번한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미확보

#### (1)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 등 사주 행태 극복의 어려움

국가안보사범 특히 간첩과 관련된 사건은 증거를 수집·보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내사 및 초동수사 시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거된 간첩들에 의한 자백 또는 조사 시 드러난 진술이 재판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전 차단하는 행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민변」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사건’ 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 결성 이전에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을 접촉하여, 관모봉으로부터 “1993년 8월에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접견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직접 듣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 달라”고 회유하며 국정원 조사 시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2년 7월 수사 중인 보위부 여간첩 이○○(48세)를 접견하면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위폐 거래를 한 사실로 검사가 5년형을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사주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가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 (2)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 제기 행위

왕재산 간첩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들도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 조치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안목표 시설인 정보기관 출입에 필수적인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국정원이 마치 변호사의 조력을 막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며 2011년 7~8월

2달에 걸쳐 법원에 국정원의 출입조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準抗告)를 13건이나 제기하고, 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추겨 동반 귀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2년 1월 3일 대법원은 국정원의 보안검색 절차는 보안목적을 위한 청사 관리권의 행사로써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으로 실시되어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참여권을 이유로 정당한 목적의 통상적 검색절차조차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등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준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일부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보안검색 대 통과를 거부하고 피의자를 선동하여 동반 귀가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행위의 미제지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을 교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의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진술하려는 피의자에게 묵비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줄거나 소설책을 읽으며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하는가 하면, 신문과정에 참여한 장○○ 변호사의 경우에는 줄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으며, 출석 불응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고, 출석 요구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법한 신문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끼어들면서 수사관의 말투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거나 수사관을 자극하는 언동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피의자가 답변 대신 반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사시간을 지정하거나 불구속 피의자·참고인을 부추겨 조기 퇴실을 요구하고, 수사관이 신문 후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간인을 요구하면 간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와 피의자들의 신문투쟁을 교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 당시에는 변호사가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퇴거를 요구하자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며 담당수사관과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문도중 조사실 밖에서의 식사와 휴식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교묘히 신문의 맥을 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출석기일을 연기 내용을

통보, 변호인 휴가 등 이유로 출석기일 조정 요청, 수사관에게 참고인과의 통화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적법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묵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맞지만,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까지 묵비권이라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미 자백한 피의자의 진술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敎唆)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4)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비치게 하여 수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도 안보사범 수사 시 어려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에 대해 국정원이 소환조사를 남발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법적대응(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을 시사하고, 출석을 거부한 참고인에게 국정원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객관적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기관을 통해 보안검색대 통과 관련 항의서한 전달, 중복성향 단체 동원 국정원의 불법·과잉수사 항의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정당한 수사행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을 선전하여 간첩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주력한 사례가 빈번하다.

#### (5)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권을 악용, 수사방해

일심희, 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들 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해 놓은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를 방해해 오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사방해 수법은 첫째,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잠을 자며 수사를 방해하고 둘째, 피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책장을 소리 내어 넘기며 책을 읽는 등 변호인 참여의 취지와 전혀 무관한 행태로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하며 셋째, 수사관의 신문에 끼어들어 "지금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신경질적으로 대신 답변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며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휴식을 요구하거나 식사를 제공해도 외식을 해야겠다며 조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다섯째,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변호인 휴가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연기하는 행위 여섯째, 수사관과 통화 시 녹음사실 고지 후 수사관련 민감 질문 및



답변요구로 수사관을 압박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당한 수사를 ‘조작수사’라며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등 변호인 접견·참여권을 최대한 악용해오고 있다.

#### (6) 재판 지연 기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 시에는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및 증거물 입수과정, 원본 동일성 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증인 신문에만 매달리게 하는 등 재판 지연전술을 구사하였다. 또한, 본격 재판에 앞서 ① 준비기일(4회) 추가 요청, ② 변론준비 등을 핑계로 주 4회 공판은 너무 많으며 2회 공판 또는 오전 공판만 진행할 것을 요청(재판부 모두 기각)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2013년 11월 14일 1심 11회 공판에서 본안과 직접 관련 없는 후속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국정원 면회실에서의 CNC 사무실 압수 SD카드를 봉인해제 작업 중 국정원 수사관이 변론자료 모니터 시연화면을 사진 촬영했다며 ‘공판절차 중지, 장소기각, 변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상당 시간 재판을 지연하였다. 12월 13일, 19회 공판에서는 공판 말미에 자신들이 내세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 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갑자기 요청하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목적은 사건의 본질을 흐려지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조작사건이라 공세하는 패러다임 극복을 위한 국민과의 의사전달 과정의 부재

‘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사건 때 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조작사건 대책위원회’ 발족을 주도하거나 연계 활동하면서 상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았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시에는 ‘일심회 사건 연행자가족 대책위원회(가칭)’ 등과 연계하여 ‘고문·조작’시비를 제기하고, 릴레이식으로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였고, 2008년 ‘실천연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4일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엄연한 조작사건이고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민주주의 말살사건”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또한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에서는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인권침해·조작’ 등을 주장하고,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 출입 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문제를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3건의 무더기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불구속 소환 피의자를 정문에서 데리고 가는 등 수사를 방해(법원은 준항고 모두 기각)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패러다임을 형성시켜 나갔다. 최근에 발생한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와 연대하여 “누더기 녹취록으로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 “국면전환을 위한 마녀사냥이다”며 갖가지 조작설을 유포하며 왜곡 선전했던 것이 조작사건이라고 규정짓는 패러다임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2. 안보사범 대응의 효과적 개선방안

### 1) 현행 법률의 개정

테러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함에 있어 전제조건은 테러범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테러의 일반적인 개념이 ‘정부 또는 개인이 특정한 정치적·종교적·민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외국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직접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임을 감안한다면, 현행 형법 및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유형을 충족시키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굳이 예를 들자면 형법 제324조의 2의 인질강요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형법상 인질강요죄는 인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범죄의 행위불법을 표현하기엔 부족한 구성요건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시민 또는 정부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 정도가 큰 테러범죄의 특수성을 충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테러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경우 다양한 행위유형으로 범해질 테러행위를 그 유형마다 각각 별개의 처벌 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형법 기타 특별법으로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테러행위의 다양한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개별적

유형마다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기술상 쉽지 않은 문제이며 대부분의 테러행위는 현행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적 테러행위는 기존의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되 그 범죄행위가 테러행위로 포섭되는 경우는 가중처벌 또는 형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안보사건 관련 수사방해 차단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 검토

현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병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인 바, 남북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신문참여권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토록 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외 19인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제89조와 제209조에서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등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 등의 권리는 비변호인과의 접견 등의 권리와 달리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중요한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표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현행	개정안
第34條(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생략) 〈신설〉	第34條(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 <u>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 및 의약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자료: likms.assembly.go.kr/bill, 2015년 4월 18일 검색.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5)</sup> 한편 대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신체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접견교통권 제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sup>6)</sup>

개정안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sup>7)</sup>

5) 헌법재판소 2011. 5. 26. 자 2009헌마341 결정.

6)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접견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변호사 접견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3) 안보사범에 대한 전문성 확보

#### (1) 검찰의 수사 전문성 확보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등 안보사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공 수사의 관행과 문제점을 개선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 인사 주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의 안보위해사범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1년인 검사의 인사 주기가 짧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없으므로 개선된 인사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간첩 사건의 경우 위험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내사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를 수집한 뒤 입건·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는 등 민감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입국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기존 법 이론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계속 생기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과 관련 외국 입법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간첩 등 안보사범은 강·절도, 살인 등 기존 체제 내 범죄와 달리 바깥에서 우리 체제를 공격하는 형태이므로 주요 안보범죄 유형에 대하여 형사절차법을 따로 두고 있는 미국 등의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외국의 여러 입법 상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안보사범에 대한 공판능력 강화

안보사범에 대한 공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문 공안사건 담당 판사

---

7)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 대상범죄, 제한의 요건, 제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안보사범의 사례를 보면, 전향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국정원 등 사법경찰관이 20일, 검찰에서 30일 도합 50일 간이라는 짧은 법정 수사기간 내에 간첩범죄내용조사 및 이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갖추기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까지 발각 된 간첩 사건을 살펴보면 적발 및 체포과정에서 호신 및 자살용 권총과 소음기, 대북송신용무전기, A-3수신용 라디오, 난수표 및 암호표 등 통신문건, 각종 서류 및 보고서 등이 압수되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시기에는 간첩이란 단서만 있으면, 미화공작금, 송신용무전기, 수신용 라디오, 난수표와 암호표 등 물증확보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인터넷과 SNS 등 통신수단의 발전과 IT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간첩연락통신'을 가지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희박해졌고 물증보다는 자백과 증언 등 진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소 유지와 유죄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인 본인의 자백이나 관계자의 증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외형상 형사소송법등 법리(法理)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다른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없지 않다.

검찰에公安부가 있고 간첩사건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있는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법원에는 간첩의 행태와 수법 그리고 간첩수사의 한계와 애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견해를 갖춘 간첩 및公安사건전담판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5)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보수사를 추구해야 한다. 민주화와 개방화가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국가안보수사기관의 역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기관의 역량만으로 국가안보위해세력을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안보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의 안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수사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안보위해세

력의 활동양상 및 적발된 안보위해사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연례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 론

9·11 테러사건 이후 주요 국가는 감청제도의 확대, 비밀 수색의 허용, 구금기간의 연장 등 많은 감시규정과 수사기관·법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법제도의 규정방식과 제도내용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대테러활동에 대한 사전방지를 위한 감시활동과 수사 기능에 따른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미국은 애국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요 안보사범으로 판단이 된다면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능해지고, 특별한 혐의가 없이도 정부에 의해 구금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호소할 수도 없게 된다.

이처럼 대테러 방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측면에 무게를 둔 나머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으나 적법절차위반의 소지가 있는 법제 중심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집행기관의 기능과 권한강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되 국가의 중요 안보위협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기본권 제약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위협시 각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은 '경찰과 범죄 증거법'에 테러·마약 범죄에서 필요하면 일정 시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변호인이 몸짓으로 피의자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사관이 질문할 수 없게 자주 끼어들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독일은 형법 규정을 통해 내란·간첩 사건 피의자에겐 국가 안전에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제한한다. 일본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변호인의 접견 또는 수수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들 주요국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를 국내 사례분석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영국에서 제정한 주요 테러대응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하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중요 안보사범에 대해서는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적 보호법익을 우선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주요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안보범죄와 비안보범죄간 프라이버시 제한 규정의 범위를 상이하게 접근하는 법률의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안보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안보사범이나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나 변호사 수사 참여 시 그 기준과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의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호인 접견권의 남용은 수사를 지연할 뿐만 아니라 법익차원에서 보면 안보범죄에까지 기본권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안보사범은 일반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과 달라 주요 안보범죄 유형에 대하여 형사절차법을 따로 두고 있는 미국 등의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외국의 여러 입법 및 판시 상황을 연구하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안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상의 형사특례규정은 안보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거나 후퇴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국가안보수사기관의 역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기관의 역량만으로 국가 안보위협세력을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수사하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첨단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정보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안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과 수사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국가정보원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권한용 (2010),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동아법학」, 48: 895-926.
- 김병선 (2012), “간접사건의 행위자 네트워크: 북한과의 접촉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패턴과 그 변화”, 「경제와 사회」, 94: 80-117.
- 류장만 (2006), “미국 테러법 주요쟁점 및 우리나라의 테러관련 입법론”,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논문집」.
- 모영동 (2013),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국제적 환경손상: 환경안보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검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201-225.
-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126-154.
- 법제처 (1989), 「국가안보에 관한 외국 입법례」.
- 손동권 (2006), “주요 국가의 대테러법안 강화실태”,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 신의기 (2007),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 오기두 (1997),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윤민우·김은영 (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1: 157-185.
- 윤태영 (2010),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실제, 문제점 및 정책적 함의”, 「한국위기관리논문집」, 6(1): 82-100.
- 윤해성 (2011), 「대 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대성·김종오 (2009), “테러범죄와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6: 449-468.
- 이수형·전재성 (2005),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체제”, 「국방연구」, 48(2): 71-100.
- 이은모 (2010), 「형사소송법」(서울: 박영사).
- 이진수 (2000), “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42: 1-15.
- 이창무 (2010),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91-111.
- 정상화 (2009), “일본의 테러리즘 대응책: 정보기구와 관련법규의 분석”, 「국가정보연구」, 1(2).

- 주성빈·최응렬. (2012),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형사사법 연구」, 2(1): 137-174.
- 채재병. (2007),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와 지속성: 역사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255-281.
- 행정자치부. (2007), 「보안업무 편람」(서울: 안전자치부).

## 2. 국외문헌

- David F. Forte. (1986), “Terror Terrorism: There is Difference”,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97: 39-51.
- David C. Gompert, and Phillip C. Saunders. (2011), “Mutual Restraint in Cyberspace,” in *The Paradox of Power : Sino-American Strategic Restraint in an Age of Vulnerabilit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Edward A. Lynch. (1987), “International Terrorism: The Search for a Policy Terrorism”,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9: 1-85.
- Martin C. Libicki. (2009), *Cyberdeterrence and Cyberwar*.
- Norman Abrams. (2011), *Anti-Terrorism and Criminal Enforcement*, Abridged Edition.
- Patrick M. Morgan. (2010),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Deterrence Concepts and Theory to the Cyber Realm”, i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eds., *Proceedings of a Workshop on Detering Cyberattacks: Informing Strategies and Developing Options of U.S. Policy*, National Academies Press.
- Richard L. Kugler. (2009), “Deterrence of Cyber Attacks,” in Franklin D. Kramer, Stuart H. Starr and Larry K. Wentz, eds., *Cyberpower and National Security: Cyberpower and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Potomac Books.
- Sloan Stephan. (2002), “Organizing for National Security: The Challenge of Bureaucratic Innovation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Special Issue): 124-125.
- Stephanie A. Jirard. (2008),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Pearson.
- Stewart A. Baker and John Kavanagh. (2005), *Patriot Debates*, ABA (Chicago, IL).
- The White House.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Thomas J. Mowbray. (2010), “Solution Architecture for Cyber Deterrence”, SANS Institute.
- William J. Lynn, III. (2010), “Defending a New Domain: The Pentagon's Cyberstrategy”, *Foreign Affairs*, 89(5): 97-108.

**【Abstract】**

## **A Study on procedure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Security**

Joo, Seong-Bhin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every effort to suppress security crimes, to provide numerous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to prevent security crimes such as the terrorism and spy. Particularly, 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security are strengthening related legislation under new-security conditions. Things work a little differently about security crimes because the nati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basis of individu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under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security crimes. Therefore they have policy that permits major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e.g. security and communication monitoring ...).

Criminal procedure's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are very important for events related security. Bu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between criminal offense and security crimes makes no odds in the Korea. Continuance of such a national mood will accuse of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in preparation for new-security conditions recently.

To revise with international best security legislation, We should institute a proper registration system in Korea's situation. This study have been discussing how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under new-security conditions through the cases analysis of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 in Korea

**Key words : Arrest, Detention, Security, Spy, Terror,  
Procedure of criminal cases**